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유가연동보조금(천연가스(CNG)) 지급기간 연장 안내

1.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-7173호(2023.11.07.)와 관련입니다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·물류업계의 유류비(천연가스 포함)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여객자동차·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·관리규정」 일부 개정('23.11.01 시행)을 통해 천연가스(CNG)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(현행) 2023.07.11. ~ 2023.10.31.(4개월)

나. (개정) 2023.07.11. ~ 2023.12.31.(6개월)

※ 천연가스(CNG) 유가연동보조금 (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시적 초과분 보조)

[지역별 평균 구매가격(원/㎥) - 기준가격(1,330원/㎥)]의 50%

다만, 183.21원/㎥을 초과하지 못한다.

(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50%)

붙임 :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당 박영수 부장 라영석 실장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 222호 (2023.11.09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